

GANGJIN 

# *Web Contents*



# 목차

목차	2
민원사무처리	3
위생민원	3
공중위생영업	3
이·미용사 면허신청	4
식품영업	4
허가사항 변경허가(소재지변경에한함)	4
허가사항 변경신고	5
등록사항 변경등록	5
등록사항 변경신고	5
영업소의 소재지 변경	6
기타변경(영업소 소재 변경외)	6
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	6
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신고	6
조리사 면허 발급 및 재교부 신청	7

민원사무처리

민원서식


**위생민원**

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영업 민원처리사무입니다.

## 공중위생영업

- 숙박업: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
- 목욕장업: 손님이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
- 이용업: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
- 미용업: 손님의 얼굴·머리·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
- 세탁업: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
- 건물위생관리업: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·시설물 등의 청결을 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

구분	근거법령	구비서류	처리절차
영업신고 (즉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3조제1항</li> <li>▪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</li> <li>▪ 위생교육필증 1부</li> <li>▪ 면허증원본(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)</li> <li>▪ 전기안전점검확인서(「전기사업법」 제66조의2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하는 경우)</li> <li>▪ 소방시설완비증명서(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)</li> <li>▪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(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하는 경우)</li> </ul>	신고서작성 → 접수 → 서류 검토 → 결재 → 영업신고증 교부
영업신고 사항변경 (즉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3조제1항</li> <li>▪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영업신고증</li> <li>▪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</li> </ul>	변경신고서작성 → 접수 → 서류검토 및 시설조사 → 결재 → 영업신고증 교부
지위승계 (즉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3조의2</li> <li>▪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영업신고증 1부</li> <li>▪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·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</li> <li>▪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</li> <li>▪ 기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</li> <li>▪ 양수인 위생교육필증 1부</li> </ul>	신고서작성 → 접수 → 서류 검토 → 결재 → 영업신고증 교부
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면허증(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)</li> </ul>	
폐업 (즉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3조제2항</li> <li>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영업신고증</li> </ul>	신고서작성→접수→서류 검토→결재→통보
재교부 (즉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제5항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고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분실사유서 작성</li> <li>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신고증</li> </ul>	신청서작성→접수→서류 검토→결재→영업신고증 교부

## ◎ 이·미용사 면허신청

- 근거법령: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
- 구비서류
  - 졸업증명서, 학위증명서, 이수증명서, 국가기술자격 취득확인서 중 1부
  - 미용사 면허 발급용 의사진단서 1부(최근6개월 이내의 것)
  - 전문의 진단서 1부  
(정신질환자이지만 전문의가 이·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)
  - 사진 2장(최근 6개월 이내의 찍은 가로3.5cm 세로4.5cm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)

## 식품영업

구분	근거법령	업종	구비서류
영업허가 (3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</li> <li>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식품접객업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단란주점영업</li> <li>유흥주점영업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위생교육 수료증</li> <li>건강진단결과서(보건증)</li> <li>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(LPG 사용 시)</li> <li>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(시험)성적서 (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제조, 조리,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)</li> <li>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사본</li> <li>소방시설 완비증명서 (소방서발급)</li> <li>전기안전검사 확인서 (한국전기안전공사 발급)</li> </ul>
처리 절차: 신고서 작성 → 접수 → 서류검토 및 시설조사 → 결격사유조회 → 결재 → 영업허가증 교부			
영업허가사항변경신청 (3일/즉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제1항</li> <li>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식품접객업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단란주점영업</li> <li>유흥주점영업</li> </ul> </li> </ul>	<p><b>허가사항 변경허가(소재지변경에한함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영업 허가증 1부</li> <li>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(LPG사용 시)</li> <li>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(시험)성적서 1부 (지하수 등을 식품의 제조, 조리,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)</li> <li>소방시설 완비증명서 1부(소방서 발급)</li> </ul>

(<http://www.gangjin.go.kr>)
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전기안전점검 확인서(한국전기안전공사 발급)</li> </ul> <p><b>허가사항 변경신고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영업허가증 1부</li> <li>■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1부(소방서 발급)</li> </ul>
처리절차: 신고서 작성 → 접수 → 서류검토 및 시설조사 → 결재 → 영업허가증 교부			
영업등록 (3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5항</li> <li>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식품제조·가공업</li> <li>■ 식품첨가물제조업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위생교육 수수료증 1부</li> <li>■ 제조방법 설명서</li> <li>■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(시험) 성적서 1부 (지하수 등을 식품의 제조, 조리,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)</li> <li>■ 건강진단결과서</li> </ul>
처리절차: 신고서 작성 → 접수 → 서류검토 및 시설조사 → 결재 → 영업등록증 교부			
영업등록사항변 경신고 (3일/즉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5항</li> <li>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식품제조·가공업</li> <li>■ 식품첨가물제조업</li> </ul>	<p><b>등록사항 변경등록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대상: 영업소의소재지, 추가 시설을 갖추어서 새로운 식품군 추가</li> <li>■ 영업 등록증 1부, 제조방법설명서</li> <li>■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(시험) 성적서 1부 (지하수 등을 식품의 제조, 조리,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)</li> </ul> <p><b>등록사항 변경신고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대상: 영업소의 성명(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),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, 영업장의 면적</li> <li>■ 영업등록증 1부</li> <li>■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, 위생교육 수수료증 1부</li> <li>■ 제조방법설명서</li> <li>■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(시험) 성적서 1부(지하수 등을 식품의 제조, 조리,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)</li> <li>■ 건강진단결과서</li> </ul>
처리절차: 신고서 작성 → 접수 → 서류검토 및 시설조사 → 결재 → 영업등록증 교부			
영업신고 (즉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제4항</li> <li>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</li> <li>■ 식품운반업</li> <li>■ 식품소분·판매업</li> <li>■ 식품냉동·냉장업</li> <li>■ 용기·포장류제조업</li> <li>■ 식품접객업</li> <li>■ 휴게음식점영업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위생교육 수수료증 1부</li> <li>■ 건강진단서 1부</li> <li>■ 제조방법설명서(즉석판매제조·가공업에 한함)</li> <li>■ 시설사용계약서(식품운반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)</li> <li>■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 완성검사필증 (LPG사용하는 휴게·일반음식점, 제과점영업)</li> <li>■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(시험) 성적서 1부(지하수 등을 식품의 제조, 조리, 세</li> </ul>


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일반음식점영업</li> <li>· 위탁급식영업</li> <li>· 제과점영업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)</li> <li>·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사본,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</li> <li>· 휴게. 일반음식점, 제과점중 영업소 면적 지하 66㎡이상, 2층이상 100㎡이상인 업소</li> </ul>
처리절차: 신고서 작성 → 접수 → 서류검토 → 결재 → 영업신고증 교부 → 시설조사			
영업신고 (3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「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」 제6조</li> <li>· 같은 법 시행규칙 제5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건강기능식품판매업</li> <li>·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</li> <li>·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위생교육수료증 1부</li> <li>· 보관시설 임차계약서(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)</li> <li>·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(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)</li> </ul>
처리절차: 신고서 작성 → 접수 → 서류검토 및 결격사유 조회 → 결재 → 영업신고증 교부 → 시설조사			
영업신고 사항변경 (즉시~3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제4항</li> <li>·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</li> <li>· 식품운반업</li> <li>· 식품소분·판매업</li> <li>· 식품냉동·냉장업</li> <li>· 용기·포장류제조업</li> <li>· 식품접객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휴게음식점영업</li> <li>· 일반음식점영업</li> <li>· 위탁급식영업</li> <li>· 제과점영업</li> </ul> </li> </ul>	<p><b>영업소의 소재지 변경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영업신고증 1부</li> <li>· 제조방법설명서(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한함)</li> <li>·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(LPG사용시)</li> <li>·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(시험) 성적서 1부 (지하수 등을 식품의 조리·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)</li> <li>·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(소방서발급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휴게. 일반음식점, 제과점중 영업소가 지하층에 위치하고 영업장 면적이 66㎡이상인 경우나, 2층이상에 위치하며 100㎡이상인 업소)</li> </ul> </li> </ul> <p><b>기타변경(영업소 소재 변경외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영업신고증 1부</li> <li>·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역 1부</li> </ul>
처리절차: 신고서 작성 → 접수 → 서류검토 → 결재 → 영업 신고증 교부 → 시설조사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「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」 제6조</li> <li>· 같은 법 시행규칙 제5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건강기능식품판매업</li> <li>·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</li> <li>·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</li> </ul>	<p><b>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가. 영업신고증</li> <li>· 나. 보관시설 임차계약서(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보관시설을 임차한 자)</li> <li>· 다.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(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)</li> </ul> <p><b>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신고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영업신고증</li> </ul>
처리절차: 신고서 작성 → 접수 → 서류검토 → 결재 → 영업신고증 교부 → 시설조사			

<p>식품영업자지위 승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영업허가: 3일</li> <li>▪ 영업등록: 3일</li> <li>▪ 영업신고: 즉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「식품위생법」 제39조제3항</li> <li>▪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식품영업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영업허가증, 영업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1부</li> <li>▪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양도의 경우: 양도·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</li> <li>▪ 상속의 경우: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</li> <li>▪ 그 밖의 경우: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</li> </ul> </li> <li>▪ 위생교육 수료증(양수인)</li> <li>▪ 건강진단결과서(양수인)</li> <li>▪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 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(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)</li> <li>▪ 화재배상책임보험(다중이용업소 해당)</li> </ul>
처리 절차: 신고서 작성 → 접수 → 서류검토 → 결재 → 영업신고증 교부			
<p>폐업신고 (즉시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제3항</li> <li>▪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식품영업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1부</li> <li>▪ 사업자등록증을 동시 폐업 할 경우</li> <li>▪ 사업자 등록증 1부</li> </ul>
처리 절차: 신고서 작성 → 접수 → 서류검토 → 결격사유조회 → 결재 → 영업허가증 교부			
<p>재발급 (즉시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 또는 제88조, 같은 법 시행규칙</li> <li>▪ 제40조제5항, 제42조제11항, 제43조의2제4항 또는 제94조제4항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식품영업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영업허가증, 영업신고증, 영업등록증은 집단급식소 설치·운영신고증 1부</li> </ul>
처리절차: 신고서 작성 → 접수 → 서류검토 → 결재 → 영업허가증, 등록증, 신고증 교부			
<p>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(즉시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「식품위생법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, 제94조제2항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집단급식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위생교육필증 1부</li> <li>▪ 건강진단결과서 1부</li> <li>▪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(LPG사용하는 경우에 한함)</li> <li>▪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(시험) 성적서 1부(지하수 등을 식품의 조리,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)</li> <li>▪ 양도·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·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(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)</li> </ul>
처리절차: 신고서 작성 → 접수 → 서류검토 → 결재 → 신고증 교부			

## ◎ 조리사 면허 발급 및 재교부 신청

- 근거법령: 「식품위생법」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 · 제81조제1항

(<http://www.gangjin.go.kr>)

- 면허신청

- 조리사 면허발급용 건강진단서(5일소요)
-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
- 사진 2매(최근 6월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3cm×4cm)

- 재교부

- 면허증
- 사진 2매(최근 6월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3cm×4cm)

---

COPYRIGHT © GANGJIN-GUN. ALL RIGHT  
RESERVED.



GANGJIN

# ***Web Contents***

